



2026년 **7급**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2026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본 안내자료는 업무담당자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및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시험령」, 「균형인사지침」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Contents

04	I. 제도 개요
05	I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2026년)
06	III. 추천 요건
13	IV. 시험단계 및 합격자 발표
15	V. 자주 물어보는 질문
참고	
20	1. 향후 변경사항 안내
20	2. 채용제도 비교(전국 지역인재- 공채시험)
21	3. 직렬별 가산 자격증
26	4.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기출문제



I 제도 개요

-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별도의 취업 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선발 절차



○ 수습 근무

- 수습이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26년 기준 월 308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7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2026년 기준)

구분	연보수	월평균 보수	월봉급액	직급보조비 (월)	정액급식비 (월)	명절휴가비 (월평균)	정근수당 (월평균)	정근수당 가산금(월)	초과근무수당 (월정액분)
7급 (1호봉)	3,697만원	308만원	232만원	18만원	16만원	23만원	4만원	3만원	12만원

※ 수습기간에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미지급

○ 시험 안내

- 매년 12~1월 선발계획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선발규모 및 경쟁률

(단위: 명,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선발인원	80	90	100	105	110	120	130	140	145	160	165	185	175	162	180
추천인원	367	491	474	629	702	608	498	511	481	640	681	495	526	502	565
경쟁률	4.6:1	5.5:1	4.7:1	5.9:1	6.4:1	5.1:1	3.8:1	3.7:1	3.3:1	4.0:1	4.1:1	2.7:1	3.0:1	3.1:1	3.1:1



I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2026년)

○ 선발예정인원 : 총 180명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21명)			121명	전 중앙행정기관
과 학 기 술 (59명)	공 업	일반기계	8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5명	산업통상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화공	4명	지식재산처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시 설	일반토목	8명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건축	7명	
	방재안전	방재안전	2명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전송기술	6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2명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	일반수산	2명	해양수산부
	환경	일반환경	2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보건	보건	2명	보건복지부
	전 산	전산개발	7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	2명	
		데이터	2명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26. 1. 27.(화) 09:00 ~ 1. 30.(금)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6. 2. 27.(금)	2026. 3. 7.(토)	2026. 3. 27.(금)
서류전형	-	-	2026. 4. 21.(화)
면접시험	2026. 4. 21.(화)	2026. 4. 29.(수)~4. 30.(목)	2026. 5. 19.(화)

※ 자세한 시험 관련 사항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III 추천 요건

1 추천 학교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 등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문대학 등
 -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구 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일반대학 등	학사학위 과정	전국 지역인재 7급
전문대학 등	학사학위 과정(전공심화과정 등)	전국 지역인재 7급
	전문학사학위 과정	전국 지역인재 9급(과학기술직군)

(2) 추천 지역

- 각 대학의 현재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추천지역으로 함
- 사이버 대학은 등록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추천지역으로 함

(3) 분교의 추천방법

-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치한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가능하며, 분교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추천지역으로 함

▶ 자체 추천이 가능한 분교 현황('25.12월 기준)

▷ 한양대(안산),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 동국대(경주), 연세대(원주)

- 그러나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캠퍼스)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분교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추천권한이 없어 본교에서 일괄적으로 추천해야 함

(4) 방송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재학 중 수강했던 지역대학을 근거지로 하여 지역을 표기해야 함

▶ 방송통신대학교 추천 시 유의사항

- ▷ 추천대상자가 2개 이상의 지역대학에서 수강한 경우, 마지막 학기를 수강한 지역에서 추천가능
▷ 방송통신대학의 추천 상한인원은 전체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함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구 분	내 용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인 사람 (▶ 재적 : 휴학, 수료, 졸업유예 포함) ※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졸업자	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인 사람 (2026년 시험기준) 졸업월에 관계없이 2023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2)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관련 학과 계열(2026년)

직군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행정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기술	공업	일반기계	공학 계열
		전기	
		화공	
	시설	일반토목	
		건축	
	방재안전	방재안전	자연 계열
	방송통신	전송기술	
	농업	일반농업	
	해양수산	일반수산	
	환경	일반환경	
	보건	보건	의약 계열
	전산	전산개발	공학, 자연, 의약 계열*
		정보보호	
		데이터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 합니다.
 - 전공학과가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에 속할 경우 행정직군으로 추천하며, 공학, 자연, 의약 계열에 속할 경우 과학기술직군 내 관련 직렬(직류)로 추천

중요 2028년부터 전산직렬 관련 학과 계열을 '공학,자연,의약계열'에서 '공학 계열'로 변경

유의사항

- ① 계열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9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분류 중 **대분류**에 의함
 - 학과(전공)의 한국교육개발원 분류는 각 대학의 **고등교육통계조사 담당자가 '고등교육통계조사시스템'(hisys.kedi.re.kr) 내 [학과관리 > 학과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함.
 (대학에서 등록한 계열과 교육통계상 계열이 다를 수 있음)

※ 원서접수 시 학과코드(예:U04010100006) 입력, 교육통계 상의 계열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과명	학과코드
공학계열 04 (계속)	건축 0401 (계속)	건축·설비 공학 040101 (계속)	건축공학·설비공학부	U04010100006
			건축공학전공	U04010100007
			건축도시공학부	U04010100008
			건축도시도록공학계열	004010100009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U04010100010
			건축에카트로닉스공학과군	U04010100011
			건축설비·기계공학부	004010100012
			건축설비공학과	004010100013
			건축설비공학전공	U04010100014
			건축설비학과	U04010100015
			건축설비학전공	U04010100016
			건축시스템공학부	004010100017
			건축·건설시스템공학부	004010100018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U04010100019

- ②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를 경우 대학 자체계열로** 추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학 자체계열을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르게 정한 **근거(학칙 등)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특정학과 전공자를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그 학과 전공자는 대학 자체계열 기준으로만** 추천 가능

- ◆ (△△학과) 교육통계 상 공학계열이고, 대학 자체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 (원칙) 교육통계 상 계열(공학계열)에 따라 과학기술직군 관련 직류로 추천 가능
 ▷ (예외) 대학 자체계열(인문·사회계열)에 따라 행정직군으로 추천 가능
 단 '△△학과'를 교육통계 상의 공학계열이 아닌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한 근거 제시 (서류전형 시 적격여부 판단)
 ⇒ '△△학과' 학생을 대학자체계열로 추천 시 A학생은 공학계열, B학생은 자체계열로 추천 불가

- 복수전공자는 두 개의 학과 중 조건에 충족하는 학과로 추천할 수 있으나, 부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공학과로 추천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유의사항

- ①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② 공학, 자연, 의학 계열 학과 전공자가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 불가**

- ◆ (예시) 공업직렬 '일반기계' 직류
 ▷ 관련 학과 : 공학계열 학과 추천 가능
 ▷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자연, 의학계열 학과 전공자도 추천 가능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전공자는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추천 불가
 ※ 가산 대상 자격증(산업기사 이상)과 달리 기능사 이상 인정

중요 전산 직렬 자격증 필수 요건 폐지(24. 1. 1.),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 인정(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참고) 신설

(3) 학과성적

구 분	성 적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추천 심사일 기준으로 성적요건 판단(추천일 기준 석차 산출 증빙자료 보관에 유의하여,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졸업인원이 29명인 경우 2등까지만 추천 가능

※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편입생 및 휴학생 성적산출 방식		
▷ (편입생)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 가능	< 예시 > 예) 2022년 3월에 편입을 하여 2022년~2023년 동안 총 4학기를 이수하여 졸업학점의 3/4이상 취득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편입학 대학에서 추천 가능 예) 2022년 8월에 편입 후 2022년~2023년 동안 총 3학기를 이수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점의 3/4이상 취득하더라도 편입학 대학에서 추천 불가	
▷ (휴학생) 휴학 당시의 석차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전산시스템 상 휴학 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석차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 때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 적용		

중요 2027년부터 성적요건은 학과(전공) 상위 10%→15% 이내로 변경 예정

(4)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기준점수	71점	700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 기준 점수이상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장려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제도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하여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예) (공무원 시험 응시예정자) '23.3월 TOEIC 응시 후 사전등록 시 '28.12월까지 인정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 참조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원서접수일까지 실시된 시험 중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 없음)

(6)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7)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습니다.

3 추천 가능 인원

대학입학정원 (추천시점 기준)	500명 이하	501~ 1,000명	1,001~ 1,500명	1,501~ 2,000명	2,001~ 2,500명	2,501~ 3,000명	3,001~ 3,500명	3,501~ 4,000명
추천 가능 인원	8명 이내	9명 이내	10명 이내	11명 이내	12명 이내	13명 이내	14명 이내	15명 이내

※ 4,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 500명 증가 시마다 추천인원을 1명씩 추가

유의사항

- ① 각 대학은 시험연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추천 가능 인원의 기준인 입학정원에는 편입학이나 정원외 입학자는 포함되지 않고, 신입학생만 의미함

4 추천 대상자 선발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학의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당해 대학은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개최하여 추천심사회의 참석자가 자의적 해석이나 개인 선호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추천 지원자가 학교추천 가능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지원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 바랍니다.**
- 학교에서는 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학과성적 외에도 국내외 경시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 금지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계열(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구성 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관리하기 바랍니다.
- **동일인 추천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횟수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필기시험을 비롯한 각 시험단계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원서접수를 한 경우, 추천 횟수에 합산됨

5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1) 인터넷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접속 (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추천업무 담당자 개인이 회원가입 후 학교담당자로 등록하여 추천대상자 입력
– 학교담당자는 추천대상자가 원서접수를 완료하는지 모니터링하여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가산점 적용 및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안내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이 선발예정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시에만 부여

①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에 관계없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동일등급이라도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함

예시 일반기계 직류

- 예 기계정비기사와 기계정비산업기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1개 (2%)
※ 언어 67.5점, 자료 70점, 상황 65점 → 언어 69.5점, 자료 72점, 상황 67점
- 예 기계정비기사와 기계설계기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 2개(4%)
※ 언어 67.5점, 자료 70점, 상황 65점 → 언어 71.5점, 자료 74점, 상황 69점

②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이 가능함

- 유의사항 공학, 자연, 의학 계열 학과 전공자가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 불가
- 예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가능
- 예 사회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불가

2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의 적용으로 최종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인원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3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 본인의 필기시험 성적 및 시험 단계별 합격 여부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 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V 자주 물어보는 질문

추천요건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추천 성적요건인 학과 성적 기준 상위 15% 이내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관련 지침 개정 후 2027년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추천요건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만 추천토록 하고 있는데,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각 직렬별로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만 추천이 가능하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이 불가합니다.

추천요건

🗣 편입생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또한, 석차 계산 시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요건

🗣 대학별 입학정원 기준으로 추천인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추천인원에 졸업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학별 추천인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다만 폭넓은 응시기회 부여를 위하여 가급적 졸업예정자 위주로 추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정원 (추천시점 기준)	500명 이하	501~ 1,000명	1,001~ 1,500명	1,501~ 2,000명	2,001~ 2,500명	2,501~ 3,000명	3,001~ 3,500명	3,501~ 4,000명
추천 가능 인원	8명 이내	9명 이내	10명 이내	11명 이내	12명 이내	13명 이내	14명 이내	15명 이내

※ 4,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 500명 증가 시마다 추천인원을 1명씩 추가

추천요건

🔊 선발시험에 합격 후 다음연도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을 못할 경우 수습근무를 유예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수습근무 유예는 불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천요건

🔊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천요건

🔊 추천요건 중 성적계산방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7년부터 성적요건은 학과(전공) 상위 15% 이내로 확대됩니다.

▶석차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 총 평점평균 = $\Sigma(\text{이수과목의 학점} \times \text{평점}) / \Sigma(\text{이수과목의 학점})$

1학년 1학기 (18학점) 3.0, 1학년 2학기(20학점) 4.0 ...

3학년 1학기 (17학점) 3.2, 3학년 2학기(21학점) 4.1인 경우

$$\text{총 평점평균} = \frac{(3.0 \times 18) + (4.0 \times 20) + \dots + (3.2 \times 17) + (4.1 \times 21)}{(18 + 20 + \dots + 17 + 21)}$$

- 졸업예정자는 추천 심사일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산출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 휴학생의 경우 휴학당시 석차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전산시스템상 휴학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토록 함
- 국외대학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취득한 과목 중 석차산정이 가능한 과목은 반영하되, Pass/Fail 등으로 표기되어 석차산정이 어려운 과목은 총 평점평균 산정 시 제외

선발시험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평가하나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에서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홈페이지 '시험문제/정답' 메뉴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7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기본, 심화로 개편되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PSAT 심화 성적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선발시험

🔊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할 수가 있나요?

서류전형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적격 여부(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만을 판정합니다. 추천 요건 충족 여부만을 검증하는 것으로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됩니다.

선발시험

🔊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추천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 추천절차는 공문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예시) 관련근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2호...
-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시험 공고문은 매년 12~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발시험

🔊 추천대상자 공문은 총장이 직접 결재 해야하나요?

학교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한 전자문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 (수신처)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합격자결정

🔊 전국 지역인재 7급 합격자 결정시 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 인원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다만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의 적용으로 최종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0%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배치

🎧 부처배치 시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나요?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희망, 필기시험 성적, 전공, 어학성적,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 최종합격~부처배치 절차 개시 전까지 취득한 어학점수 및 자격증도 인정

부처배치

🎧 부처배치 시 희망한 부처로 배정이 되나요?

수습예정자는 배치인원이 확정된 부처 중 3순위까지 지망이 가능합니다. 이 후에 각 부처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처에 지망한 인원내 한해 매칭작업이 진행됩니다. 다만 3순위까지도 부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성적 등을 반영하여 잔여 부처에 배정됩니다.

부처배치

🎧 근무지는 학교 소재 지역 혹은 거주 지역 근처에서 근무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소재지 지역구분은 합격자 결정 시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중앙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어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무

🎧 수습 근무 도중에 부처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무

🎧 수습 근무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습기관에 임명된 날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1회)과 10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의 평가 결과는 1년간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심사기준이 됩니다.

수습근무

🎧 수습 근무 도중 학업을 위하여 수습근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무

🎧 수습근무 후 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습부처에서는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 ②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 ③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 ④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복무관리

🎧 수습근무 도중 몸이 아파 병가를 5개월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습근무가 연장이 되나요?

수습직원이 질병의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수습기간의 1/3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

🎧 수습직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수습직원은 균형인사지침에 기재된 봉급 및 수당만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등(ex. 출장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봉급	수당	실비변상
봉급 (7급 1호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산설)특수지근무수당, (산설)위험근무수당, (산설)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참고1 향후 변경사항 안내

- 2027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기본, 심화로 개편되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PSAT 심화 성적 활용 예정
 - ※ 전국 지역인재 7급 시험 및 PSAT 심화 원서접수가 분리되어 진행되므로 각각 원서접수 필수 (2027년도 선발시험 공고문 반드시 확인 필요)
- 2027년부터 추천 가능한 성적요건이 학과 상위 10%→15%로 변경 예정
- 관련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
 - ①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2024. 12. 18.)
 - ② '2027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2025. 3. 13.)
 - ③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2026. 3. 23.)
- 2028년부터 전산직렬 관련 학과 계열을 '공학, 자연, 의약계열'에서 '공학 계열'로 변경 예정



참고2 채용제도 비교(전국 지역인재 7급 vs 7급 공채)

	전국 지역인재 7급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 시험대상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졸업(예정)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졸업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누구나 지원 가능 -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음
✓ 선발방식	(행정) 직군으로 선발 (기술) 직류별로 선발	(행정,기술) 직류별로 선발
✓ 시험과목	PSAT(공직적격성평가)+헌법 *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기준점수 ※ 2027년부터 PSAT 심화 성적 활용 예정	(1차) PSAT (2차) 직류별 4과목 *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기준점수
✓ 임용방법	수습(1년) 후 임용여부 결정 * 근무성적평가(2회) 결과 반영	합격 시 임용보장



참고3 직렬별 가산 자격증

-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 '26년 선발직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외 직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참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 술 사 : 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일반 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방송 통신	전송 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농업	일반 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 수산	일반 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환경	일반 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건	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전산	전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전산	전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전산	전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보건교육사 3급
전산	전산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참고4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기출문제

【시 험 과 목】

헌법,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안 내 사 항

- 해당 자료는 2026. 3. 7.(토)에 실시한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공고, 기출문제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①책형

1쪽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③ 민족문화의 창달
- ④ 평화적 통일의 사명

2.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②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
- ③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② 수용자에게 상체상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격권 내지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④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인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②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④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확정에 인정 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③ '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항은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비교하여 볼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1988년 울진에서는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일이 처리되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비석이 발견됐다. ‘봉평비’라고 불리는 이 비석에는 524년(법흥왕 11년)에 법흥왕과 각 부의 대표가 거벌모로 지역 주민의 항거를 처벌하기 위해 모여서 회의한 후, 함께 교(敎)를 내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듬해 또 다른 비석이 포항에서 발견되었는데, ‘냉수리비’라고 불리는 이 비석에는 503년(지증왕 4년)에 진이마촌에서 벌어진 재산 분쟁에 대해 지증왕과 6부 대표가 공동 판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 비석은 6세기 초까지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왕과 각 부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6부가 연합하여 건국한 나라로, 초기에는 각 부가 각자의 영역과 주민을 자체적으로 다스렸을 것이라 파악된다. 화백회의는 이때 왕과 6부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중요한 정사를 처리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신라는 박·석·김의 세 성이 돌아가며 왕위를 맡았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했다. 그러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면서부터 서서히 왕권이 강화되고, 점차 국왕 중심의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화백회의의 성격도 변화했다. 특히 531년(법흥왕 18년)에 귀족을 대표하는 최고 관직인 상대등이 설치된 이후부터 화백 회의는 큰 변화를 겪는다. 이때부터 왕은 통상 화백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대등이 화백회의의 결정 사항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이에 대한 재가 여부를 결정한 후 국가의 정책으로 공포했다. 이 무렵 6부의 대표는 점차 자체적인 세력 기반을 상실하고 모두 왕의 신료로 재편성됐다. 이 시기에 신라의 왕은 마립간이 아니라 ‘대왕’으로, 귀족들은 ‘신(臣)’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7세기 중반, 신라는 중앙의 행정 관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왕 중심의 관료제를 강화했는데, 651년(진덕여왕 5년)에 중앙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집사부가 신설됐다. 이때부터 화백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의 재가를 거쳐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 분담하여 집행되었다. 이후 통일 신라기에는 중앙행정 관서의 장관 가운데 일부를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이들 중 상재상이 화백회의를 주재했다. 이 시기 화백회의는 ‘재상회의’라고도 불렸다.

- ① 집사부의 설치를 계기로 화백회의는 정무 집행 기능만 남기고 의결 기능을 상실하였다.
- ② 통일신라기 화백회의의 주재자는 중앙행정 관서의 장관 중 재상으로 임명된 사람이었다.
- ③ 세 성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맡던 신라 초기 화백회의에는 상대등이 최종 재가 권한을 행사하였다.
- ④ 봉평비와 냉수리비에 기록된 화백회의에서는 왕이 단독으로 재가한 사안을 각 부의 대표가 집행하였다.
- ⑤ 화백회의는 왕을 마립간이라고 호칭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대왕이라고 호칭한 시기에 유명무실해졌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활은 기병 무예를 중시한 고려의 주요 무기였다. 고려 초 왕건의 기병 부대가 사용한 활은 각궁으로, 고구려 무용총에도 각궁으로 사냥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오래된 활이다. 기마용 활인 각궁은 길이가 1m 정도로 작아 말 위에서 쏘기에 적합했다. 활의 몸체를 나무로 만들고 중앙의 굽은 부분에는 짐승의 뼈를 얹게 덧붙였는데, 탄력성이 매우 강해 사정거리가 약 250m에 달했다. 각궁을 쓰는 왕건의 부대는 후백제와의 통일 전쟁에서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고려의 특수 보병 부대인 경궁군과 정노군도 활을 다루는 부대였다. 경궁군이 다루는 경궁은 크기가 크고 장력이 강해서 관통력이 강한 비기계식 활이었다. 경궁은 주로 적진에 설치된 시설이나 방어진을 파괴할 때 사용했는데, 시위를 당기는 것에도 각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과 전문적 기술이 요구됐다. 그래서 경궁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궁을 쓰는 병사를 육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정노군은 쇠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였다. 쇠뇌는 나무로 된 활틀과 발사 장치인 뇌기를 이용해 화살을 자동으로 발사하는 기계식 활이다. 뇌기는 시위를 거는 걸쇠, 방아쇠 멈춤개, 방아쇠로 구성되어 있다. 쇠뇌는 시위를 당겨 걸쇠에 걸어 놓고 목표물을 조준한 다음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화살을 추진시킨다. 쇠뇌는 몸을 은폐한 채로 상대를 쏠 수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활에 비해 명중률도 높았다. 그러나 비기계식 활로는 분당 여섯 발을 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쇠뇌는 한 발밖에 못 쏜 시간당 발사 횟수 면에서는 불리했다.

각궁이나 경궁을 제대로 다루려면 충분한 근력과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쇠뇌는 방아쇠만 당기면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힘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었다. 또 쇠뇌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연습 시간도 경궁에 비하면 훨씬 짧았다. 전투에서 장시간 활을 쏘더라도 비기계식 활에 비해 체력 소모가 훨씬 적었다. 쇠뇌의 이런 장점 때문에 윤관은 여진 정벌 때 새로 편성한 별무반에 정노군을 포함하였다.

- ① 경궁은 탄력이 뛰어나 주로 기병 부대에서 적군의 방어진을 파괴할 때 사용되었다.
- ② 윤관이 여진 정벌을 위해 새로 편성한 부대에는 비기계식 활을 다루는 부대가 제외되었다.
- ③ 쇠뇌를 쓰는 병사를 육성하는 것은 각궁을 쓰는 병사를 육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 ④ 경궁은 쇠뇌보다 시간당 발사 횟수 면에서 뛰어났고, 쇠뇌는 경궁보다 명중률 면에서 뛰어났다.
- ⑤ 고구려 무용총에 그려진 활을 쏘기 위해서는 활틀과 뇌기를 다루는 충분한 근력이 필요하였다.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그리스의 지형은 산맥이 바다로 들어가는 형세이다. 땅은 여러 개의 계곡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러 지역으로 분리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형성되기보다는 도시 규모의 폴리스가 형성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도시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었지만 차이가 있다. 메소포타미아는 평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도시 간에 육로를 통한 연결이 가능했다. 반면, 그리스는 깊은 골짜기나 산으로 나뉘어 있어서 육로를 통한 연결보다 바닷길을 통한 연결이 더 수월했다. 지형적으로 나뉘어 있던 도시국가들은 서로 다른 특징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이후에 해상로를 통해 연결되면서 다양한 성격의 도시국가들이 융합되며 발전된 그리스 사회를 만들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독특한 건축 양식은 반원형 극장이다. 일찍이 문명이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극장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지형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강을 따라 발달한 농업국가로 광활한 평지에 위치한다. 평지에 경사진 극장을 짓는 것은 큰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 문명에서는 구조적으로 만들기 쉽고 안정적인 디자인인 산 모양의 지구라트 신전이나 피라미드를 건축했다. 마야, 잉카,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이런 피라미드 디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리스의 건축물은 계곡과 언덕이 많은 지형에 만들어졌다. 계곡의 좌우 언덕에 앉으면 마주 보게 되고, 경사로 인해 시선이 아래쪽으로 모여 천연 무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극장 형식의 공간을 자연 속에서 찾은 것이다.

그리스 반원형 극장의 공간 구조는 독특한 문화적 의미를 낳았다. 극장 객석의 배치가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무대를 내려다보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계된 무대로 인해 무대 위 사람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시선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높은 권위를 갖지만, 무대보다 높은 객석의 관객을 올려다본다는 측면에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권위가 낮다. 관객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이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과 객석에 있는 사람, 둘의 권력 위계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자연 지형을 활용한 건축물은 인공적 건축물보다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났다.
- ②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해상로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유사한 모습과 성격을 띠며 발전해 왔다.
- ③ 그리스 반원형 극장의 공간 구조는 무대 위 사람과 객석의 관객에 관한 독특한 문화적 의미를 낳았다.
- ④ 그리스에서 경사지에 반원형 극장을 세운 시기에 그리스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평지에 산 모양의 극장을 세웠다.
- ⑤ 높은 곳에 앉아 마주 보게 하고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구조물은 계곡과 평지가 모두 발달한 지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세계화의 역사는 20만 년 전에 시작되어 네 국면을 거쳐 왔다. 첫 번째 국면은 약 19만 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멀리 있는 생산지를 개척하기 위해 인구가 점차 이동한 양상이 나타났다. 당시에는 운송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식량을 운반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식량의 생산과 소비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다.

두 번째 국면은 기원전 1만 년부터 기원후 19세기 초까지의 기간으로 세계 경제의 지역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농업혁명의 결과로 사람이 식량을 찾아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 정착하여 경작할 수 있었고, 세계 각지에 도시와 고대 문명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들 내에서 생산 집단과 소비 집단 사이에 상거래가 발달했다.

현대적 의미의 세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국면부터이다. 두 번째 국면에 이어 20세기 말까지 진행된 세 번째 국면에서는 앞선 국면들에서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증기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생산방식이 질적으로 달라졌고, 무역의 규모와 범위도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생산과 소비 간에 지리적으로 광범한 분리가 나타났다. 이는 운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상품의 운송 비용이 급락한 덕분이었다. 반면, 지식의 이동 비용은 여전히 매우 높았는데, 이로 인해 상품 시장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으나 기술과 전문 지식은 선진국 안에 머물렀다.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성장 불균형과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네 번째 국면은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기로, 지식의 이동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국제적인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된 시기이다.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로 원거리에서도 복잡한 생산과정의 관리가 가능해지자, 선진국의 기업들은 고임금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생산 공간을 이동하는 해외 이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과 전문 지식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 가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중심이 점차 중국, 인도 등으로 이동하는 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다.

- ①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분리가 사라졌다.
- ② 무역의 범위는 두 번째 국면에서 확장되었다가 세 번째 국면에서 축소되었다.
- ③ 두 번째 국면의 세계 경제의 지역화에서 현대적 의미의 세계화를 발견할 수 있다.
- ④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생산 공간을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⑤ 세 번째 국면에서는 상품 운송의 높은 비용과 지식 이동의 낮은 비용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1쪽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도 있다. ④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3년마다 생산하여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건설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는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00조(토지에의 출입 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①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은 甲은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상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보상대상은 사용되는 토지의 지상부분으로 한다. ④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丙 소유의 토지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丙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은 할 수 있지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시·군·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조(마을기업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법인의 형태를 갖춘 것 3.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제△△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상 황>— 식품판매기업 甲은 A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현 대표자 乙은 A시 마을주민이다. —<보 기>— ㄱ. 甲은 「민법」상 법인일 수 있다. ㄴ. 甲의 대표자가 B시 마을주민인 丙으로 변경된 경우, 甲의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ㄷ.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문 없이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ㄹ.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의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량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車臺)가 등록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① 甲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乙 소유의 자동차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乙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③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인 丁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丁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戊가 자신의 자동차를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기로 하였을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